

사천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8-제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일자 : 2008. 2.

발 의 자:

1. 제안이유

법령 제명 띄어쓰기 권고사항 및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권고사항 반영

나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사항의 반영(안 제1조, 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붙임

나. 기 타

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사천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” 를 “
사천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 로
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37조” 를 “「지방자치
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42조” 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법 104조 내지 107조” 를 “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”
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 <u>사천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</u></p>	<p>제명 <u>사천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범위)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</u>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</p> <p>4. ~ 5. (생략)</p>	<p>제2조(범위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법 제113조 내지 117조</u>----- -----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 발 취

<지방자치법>

제42조 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13조 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14조 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5조 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6조 (합의제행정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합의회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17조 (하부행정기관의 장)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, 읍에 읍장, 면에 면장, 동에 동장을 둔다.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.